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05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이훈기 · 김문수 · 이재관
정일영 · 박지원 · 이주희
송재봉 · 박해철 · 허종식
박용갑 · 오세희 · 이병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한하여 지원하고 둘째까지만 자녀를 둔 가정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학자금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완화하고,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한 장학금 기준을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제2항 신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 중 “셋 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4제2항에”를 “제49조의4제3항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u>셋 이상의</u> 자녀를 양 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 ----- ----- ----- <u>둘 이상의</u> -----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u>둘 이상의 자 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 게 학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 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100분의 50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 -----.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

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제49조의4제2항에</u>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 · ③ (생략)	-----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49조의4제3항에</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	--